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령 제3437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검찰청·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 없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처분결과 또는 선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제7조의2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 삭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항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 및 삭제 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업무 및 조회·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3조·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관한 사무
-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에 관한 사무
- 3. 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에 관한 사무
-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무
- 5. 법 제8조의3에 따른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제출 및 시정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은 회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나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는 회보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나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도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 등에 관한 사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